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6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허 영·김태선·위성곤

박상혁・박 정・장철민

임호선 • 박지원 • 윤준병

홍기원・황 희・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 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 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 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배우자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배우자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워)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 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 조의4에 따른 배우자 난임치료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 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 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 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배우자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2. (생 략)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배우자 난임치료휴가의 신 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배우자 난임치료휴가를 주
	<u>지 아니한 경우</u>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